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13. /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일자: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0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경제진흥과장 권준희】

가. 제안이유

- 스마트팜 조성 및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스마트팜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- 스마트팜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장 제목 정비(안 제2장, 제4장)
- 해당 조례 정의된 용어로 조항명 정비(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개정 목적 및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, 같은 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개정의 목적은 스마트팜 조성 및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, 도시농업의 스마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.
-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.
- 서울시는 농업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, ICT 기반 실내형·교육형 도시농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강동구·은평구·노원구 등 다수 자치구가 이미 스마트팜 교육장 및 체험형 도시농업시설을 운영 중임.
- 마포구 또한 2023년부터 「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스마트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,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조치로서 의미가 있음.
- 특히 스마트팜은 첨단 환경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서, 효율적 운영관리 및 장기적 유지체계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.

나. 주요 내용

(1) 스마트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6호)

- 도시농업이 기존 텃밭 중심에서 ICT 융복합형 교육·체험 모델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, “스마트팜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“스마트팜”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.</u>

(2) 스마트팜 조성·운영 근거 신설(안 제14조)

- 구청장이 유희부지·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.
- 스마트팜 시설에서 작물재배, 교육·체험, 복지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운영 가능함.
- 또한,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보조금 관련 문언을 ‘준용’에서 ‘따른다’로 변경하여 명확성을 확보함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(스마트팜의 조성 등)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·관리하는 유휴부지, 유휴공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부지,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1. 작물재배실 및 체험장에서의 작물 재배</u> <u>2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</u> <u>3.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 작물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</u> <u>4.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③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

(3) 보조금의 지원 확대(안 제18조)

- 스마트팜 교육·체험 프로그램 및 도시농업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함.
- 보조금의 신청·교부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절차적 명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.

현행	개정안
<u>제17조(보조금의 지원)</u>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18조(보조금의 지원)</u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스마트팜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</u> <u>6.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</u>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② 보조금의 신청·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

(4) 체계 및 용어 정비

- 조례 내 장(章) 제목 및 조항명을 정의된 용어에 맞게 조정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(예: 제2장, 제4장, 제12조 등).
- 보칙에 포함되어 있던 중복·중의적 조항(준용·시행규칙 등)을 삭제하고, 개정 구조에 맞게 정비함.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<u>마포구 도시농업</u>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	제3조(기본원칙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(이하 “구” 라 한다) <u>도시농업</u> -----.
② (생략) 제2장 <u>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</u>	② (현행과 같음) 제2장 <u>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</u>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(생략) 2. <u>마포구</u> 소속 4급 <u>내지</u> 5급 공무원 3명 이내 3. ~ 5. (생략)	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구</u> ----- <u>또는</u>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생략)

제4장 도시텃밭의 조성 및 관리

제12조(도시농업 용지의 조성)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휴지, 자투리땅, 공원·녹지,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.

제14조 ~ 제16조 (생략)

제18조(공동사업 관리) 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설치·조성된 도시농업관련 시설 및 용지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,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5장 보칙

제19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장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

제12조(도시텃밭 등의 조성) -----
----- 구 -----

-----.

제15조 ~ 제17조 (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

제19조(공동사업 관리) ① -----
----- 도시농업
관련 ----- 도시텃밭 등 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다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, 도시농업의 첨단화 및 교육·체험 기능 강화를 위한 **시의적절한 입법조치**로 판단됨.
- 다만, 스마트팜은 첨단 환경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서, 초기 단계에서의 **온·습도 제어, 전력 부하 관리, 결로 방지** 등 기술적 안정화 절차가 필수적임
- 이러한 안정화 과정은 시설 운영의 **효율성과 안전성**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므로, 본격적인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**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**하여 데이터 보정,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, 결로 예방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스마트팜은 초기 구축비보다 **상시 운영비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**를 가지므로, 에너지 효율화, 인력운영의 최적화, 시설 통합관리 등 **운영비 절감 대책**을 병행해야 함.
- 특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면서,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① 자체 관리인력 양성, ②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협의, ③ 모종 구매 최소화 및 육묘 중심 운영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.
- 따라서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절감방안이 **실제 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**될 필요가 있으며, 운영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**재정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**을 고려한 단계적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.

(앞쪽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스마트팜에서의 작물 재배 및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 소요

제14조(스마트팜의 조성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 ※ 스마트팜 개소 수 및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

스마트팜 상주, 관리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, 스마트팜 전기, 수도 등 공공 운영비, 모종, 씨앗, 양액 등 작물재배관련 비용 및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구비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	○						
	소계(b)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□ 총 비용(a-b)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소계						
	의존						
	재원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	소계						
	수입						
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 등						
지방채							
민간자본							
기타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합계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스마트팜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속에서 미래 농업으로 다음세대 어린이, 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스마트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으며, 스마트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①자체관리인력 양성, ②농업용전기 협의 ③모종보다 육묘 재배 원칙으로 운영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편성목	통계목	내역	예산액(천원)
인건비	기간제 근로자등보수	◦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	67,987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◦ 교육체험프로그램 용역비 ◦ 홍보물 및 교육운영관련 소모품 등	34,000
	공공운영비	◦ 공공요금(수도, 전기 통신 등) ※ 농업용 전기 적용 기준	42,000
	행사운영비	◦ 스마트팜 홍보 행사	5,000
재료비	재료비	◦ 배양액 및 종자, 모종 등 구입비	15,000
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	◦ 스마트팜시설 유지·보수비	12,000
합 계			175,987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윤선영
연락처	02-3153-8592

붙임 2

마포구 스마트 농업 활성화 사업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: 스마트농업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교육·체험의 기회 제공 및 수확물 기부 등
- 시설별 현황

연번	시설명(가칭)	면적 (㎡)	사업비 (천원)	내 용
1	망원1-2주차장 지상부 스마트팜 교육체험관	240.84	425,000	• 위치: 망원1-2공영주차장 지상부 폐쇄 공원 內 • 형태: 1개층,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1동, 온실 1동(폴리카보네이트) • 시설: 수직농장(식물공장) 및 스마트온실, 체험장 • 작물: 엽채류, 과채류 • 운영: 2025. 11.말~ 시범운영 평일, 10~17시 자유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
2	한서주차장 옥상 스마트팜 교육체험관	280 이내	400,000	• 위치: 한서공영주차장 옥상 • 형태: 1개층,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1동, 온실 1동(폴리카보네이트) 예정 • 시설: 수직농장(식물공장) 및 스마트온실, 체험장 • 작물: 엽채류, 과채류 • 운영: 2026. 상반기 중~ 시범운영 평일, 10~17시 자유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 ※ 한서주차장 리모델링 공사(체육진흥과), 스마트팜 공사(경제진흥과)
3	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	-	477,000	• 위치 및 형태: 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성 예정 • 시설: 1개층, 가설건축물 1동 • 작물: 엽채류 • 운영: 동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 조성 및 운영

○ 사 업 비: 1,531,000천원

- 특교세 200,000천원(망원1-2) / 특교금 477,000천원(동 옥상) / 구 854,000천원(한서 400,000 / 망원-2, 동 옥상 공통 454,000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(수정안 별첨)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